# **powerful** pohang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기	관	의	장	
선					
람					



# 포항시보

제773호 2010. 3. 23(화)

 ○시장지시사항
 2

 【입법예고 ▶
 ○포항시 포항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제2010-348호)
 7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입법예고(제2010-372호)
 12

 【고 시 ▶
 ○포항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제2010-17호)
 17

 【공 고 ▶
 ○공 인 공 고(제2010-368호)
 19

회				
람				

발행 : 포항시 편집 : 홍보담당관(☎270-2234)

190×268 신문용지 70g/m<sup>2</sup>

## 시장 지시(훈시)사항

- 2010. 3. 22(월) 간부회의 -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3, 22)	<ul> <li>○ 에너지 절약방안 계획수립 추진 바람.</li> <li>- 오늘(3.22일) 에너지 절약과 관련 상부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냉 '난방기 전기사용량을 확줄이고, 전구 소등 및 에너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에너지 30% 이상을 절감토록 추진 바람.</li> <li>○ 최근 전공노 행사 등과 관련 우리 직원들의 위법행위가 없도록 잘 교육·지도하여 다치는(문책 등) 일이 없</li> </ul>	녹색성장팀 (전 부 서) 자치행정과 (전 부 서)
	<ul> <li>도록 하기 바람.</li> <li>6.2 지방선거가 잡음 없이 조용한 가운데 치러지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li> <li>제10회 통일기원해변마라톤대회에 국(局)관할 단체 등 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토록 관심을 가지고 간부께서</li> </ul>	자치행정과 (전 부 서) 체육지원과 (전 부 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람.  ○ '현미상황차'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지속 추진 바람.  -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으로 각종 행사 등 기회 있 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지원에 관심 을 가져 주시기 바람.	주민복지과 (전 부 서)

## 훈 시

## ○ 봄맞이 환경정비 철저

## (3. 22) - 제설작업으로 인하

- 제설작업으로 인해 지저분해진 도로가 많이 깨끗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지저분한 곳이 많음. 도로, 시설물 등에 소방차 동원 협조를 통해 더욱 깨끗이 청소하기 바람.

청 소 과 남·북구청 읍 면 동

## ○ 포항스틸러스 응원 및 시즌카드 판매에 적극 노력 바람.

- 이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인데 많은 인원이 운 동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바라며, 시즌카드 판매가 전년 대비 저조하니 국별 산하단체를 통한 판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시장이 챙기면 관심을 갖고 하는데, 평상시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람.

체육지원과 전 부 서

## ○ 휴일 등 시장님 현장방문 시에 지시된 사항은 해당 본 부·국·소장께 반드시 보고되도록 할 것.

- 휴일, 현장에서 팀·과장께 지시된 사항에 대해서 반 드시 본부·국·소장께 보고토록 하고.

- 국·소장은 일의 방향 등을 제시해 주는 등 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해 주시고 추진력을 제고 바람. 자치행정과 (전 부 서)

○ 녹도를 많이 조성중인데 활착토록 서둘러 추진 바람. (포스코 앞 도로 등) 도시녹지과

## ○ 차별화된 관광정책 마련 및 경쟁력 제고 바람.

- 줌마렐라 뿐만 아니라, 틀에 박힌 관광상품을 벗어나 포항의 관광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아 이디어를 내고, 과장은 미션을 계속 주고 발전을 가 져올 수 있는 관광정책·시책을 개발 추진하기 바람. 관광진흥과

훈 시 (3, 22)	○ 영농준비 및 일손지원에 차질 없도록 바람.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ul> <li>가로수의 해충 포집기 제거</li> <li>가로수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가로수 해충 포집기를 조속히 제거해 주시기 바람.</li> </ul>	남·북구청
	<ul> <li>○ 간부공무원(과장급 이상)은 시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건의사항에 관심을 갖고 확인하기 바람.</li> <li>- 건의사항은 담당자 답변으로 끝내지 말고, 시민의바람인 만큼 일리가 있는 건의와 옳은 주장은 잘 챙겨서 처리 하기 바라며, 답변 시 간부공무원의 결재라인을 추가하여 좋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주요사안은 본부·국·소장께 보고되도록 조치바람.)</li> </ul>	자치행정과 (전 부 서)
	<ul> <li>○ 일자리 전략회의 시 제안된 일자리 적극 추진</li> <li>- 아이디어가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li> <li>-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전문가 채용 및 지시를 통해 미리미리 준비하기 바람.</li> </ul>	경제노동과
지 시 '10-046	<ul> <li>○ 예산조기집행 철저 및 집행상황을 보고 바람.</li> <li>-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미리 미리 챙겨 조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다음 간부회의 (4.5일 또는 4.12일)때 집행상황을 보고하기 바람.</li> </ul>	기획예산과 (전 부 서)
지 시 '10-047	<ul> <li>도시미관에 맞게 교각, 가로등주 도색(페인팅)을 검토·추진하기 바람.</li> <li>콘크리트 교각을 미관에 맞도록 도색하고, 시가지내퇴색된 가로등주를 도색, 형산강다리 가로등 윗부분의 교체를 추진하기 바람.</li> </ul>	건 설 과 (테라노바팀)

## 지 시 ○ 음식점 위생점검 및 관리, 원산지 표시 점검 철저. 환경위생과 10-048 - 모든 음식점 특히, 죽도시장·북부해수욕장 등에 위 농축산과 남、북구청 생 점검을 실시하되 직원 부족 시 많은 직원을 투입 하여 계도차원의 지도점검이 가능토록 계획 수립하 여 추진하기 바라며. - 또한 원산지표시가 확실히 이행되도록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지 시 ○ 시내버스 운전기사 불친절 행위 근절 바람. 교통행정과 10-049 ('시정에 바란다'건의) - 친절교육은 물론, 버스회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규정 대로 처벌(징계 등)하여 불친절 사례가 재발되지 않 도록 조치 하기 바람. 지 시 ○ 중앙상가 자전거 주차대 설치 검토 추진 경제노동과 건 설 과 10-050 ('시정에 바란다'건의) - 포항역 ~ 육거리 구간에 우체국, 육거리 등에 자전거 주차대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바람. 지 시 ○ 죽도시장 주변 주차질서 계도활동 철저. 교통행정과 북 구 청 10-051 - 죽도시장 주변에 대해 주차질서가 잡힐 때까지 계도 활동을 실시하되, 계도요원·주차도우미(일자리창출) 를 배치하도록 하고. - 과·구청장은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인근지역 의 유치원을 활용하여 주차장화 하는 방안에 대해 진척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람 (추가 1) ○ 담장허물기 사업은 지속 추진하기 바람. 도시녹지과 - 지시한 곳, 지시가 있을 때만 정비할 것이 아니라 전 10-036 반적 으로 정비가 필요한 곳을 찾아서 정비해 주시기 바람. (동해정비공장 주변은 철망 설치 검토 등)

(추가 1) '10-041	○ '선남선녀 만남의 장'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속히 추진하고 보고 바람.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개별지시 '10-052	<ul> <li>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지킴이 운동을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1회 추경 예산 편성 시 반영토록 할 것.)</li> </ul>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개별지시 '10-053	○ 방범용 CCTV 1회 추경 예산 편성 시 확보하여 추가 설치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 부시장 지시사항

- 2010. 3. 22(월) 간부회의 -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 봄철 시가지 가로환경정비 철저	환경위생과
(3, 22)	- 시가지 청소 및 환경정비 물론이고, 철로변·도로변·	청 소 과
	산림인접 지역, 가로수 및 차폐수림대 밑에 쌓여있	남·북구청
	는 쓰레기를 제거하는 등 봄철 환경정비를 대대적으	읍 면 동
	로 실시하기 바람.	
	○ 죽도시장 주변 주차계도활동 및 근무 철저	교통행정과 북 구 청

##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10 - 348호

「포항시 포항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포항시장 박 승 호

2010. 3. .

## 포항시 포항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문화진흥 및 창달을 위하여 포항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포항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 제2조)
- 나. 문화원의 보조금 지원 등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제4조)
- 다. 문화원의 사업별 보조금의 청구, 결정, 교부, 정산,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라.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 마.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1조)
- 바.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함(안 제12조)

#### 3. 관련법령 :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 야 한다.

② 생 략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4.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 문화예술과(주소: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 **2**054-270-2264, FAX : 270-2270, E-mail : hotlee@korea.kr)에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포항시 포항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1부

## 포항시 포항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한 포항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해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포항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함
- 2.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 을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함
- 3. "보조사업" 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함
- 제3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운영보조금과 사업별보조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 1 운영보조금
    - 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
    - 나. 문화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비
    -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 2. 사업별 보조금 :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육성 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5조(사업별 보조금의 청구 등) 보조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 업계획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 3.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 4. 보조사업의 효과
  - 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 시행계획 등
- 제6조(사업별 보조금의 결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1. 법령과 조례, 예산목적외의 배치 여부
  - 2. 포항시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여부
  - 3. 보조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
  - 4. 사업비의 적정성
  - ② 시장은 사업계획이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의 지원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교부) ① 시장은 운영보조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교부하고, 사업별 보조금은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시장은 운영보조금 또는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포항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 이라 한다)에게 통지한다.
  - ③ 보조금 교부통지서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의 시장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사업별 보조금의 정산) ① 문화원장은 사업별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원장은 사업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 발생분에 대하여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1. 법령 이나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경우
  - 3.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사무의 검사·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및 그밖의 재산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4조에서 규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보조금 관리 조례」및 「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포항시 공고 제2010 - 372호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포항시장 박 승 호

2010. 3. 23

##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국내(제)선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업자 손실 발생시 손실액의 일부를 보전해 줌으로써 노선유지 및 개설을 유도하여, 항공교통 이용객의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항공사업자의 재정지원 대상,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 나. 항공사업자의 재정지원 신청, 지원금의 교부, 정산,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다.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3. 관련법령: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 제3조(항공운송사업의 조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항공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 사업자를 포함한다. 제8조에서 같다)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4.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 교통행정과(주소 :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9층) 교통행정과 ☎ 054-270-3614 FAX : 270-3620, E-mail : ksshin1@korea.kr)에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1부

##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운송사업진흥법」제3조에 따라 포항공항에 취항 하는 항공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진흥법」제3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포항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법』제2조에 의한 정기항공 운송사업자와「항공법 시행규칙」제15조제1호에 따른 부정기 항공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1.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 2.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규모 등) ① 시장은 포항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항공노선의 연간 탑승율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 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재정지원의 기준·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와 혐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
  - 5. 운항 사실 기록부
  - 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 제6조(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30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정산) ①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동 기간 운항실적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② 정산결과 이미 교부받은 재정지원금이 정산 재정지원금에 부족 또는 초과될 경우 항공사업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시장에게 교부를 신청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대상 항공사업자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 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주의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그 밖에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									
		대 표 자		생년월일					
신 청 인		항공사명		사업자번호					
		소 재 지			<b>(</b> 7				
신청금	남액	금	원 (급		)				
산출내	1역								
운항노	-선								
여객운	임			운항기종 및 좌석수					
운항기	]간			운항횟수					
디스	l ਨl	공급좌석 수							
탑승현	1왕	탑 승 객 수							
「포항 신청힙		활성화를 위한 지	H정지원 조례」 <sup>저</sup>	세5조에 의거 재	정지원금을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성	자) 소 속 명	(인)				
포항시장	귀하								
거래은행		예 금 주		계좌번호					
첨부서류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0 - 17호

## 포항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산18번지 일원 포항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한국지질자원 연구원 포항분원)의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포항시장 박 승 호

2010년 3월 16일

-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중 연구시설 및 도로 결정
  -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 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 2.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가. 연구시설 결정조서

- н	도면	) 14 m	٥١	<b>-</b> 31	뒫	년 적 (1	$\mathrm{m}^2)$	최 초	ul =
구분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신설	6	연 구 시 설 {한국지질자원 연구원(포항분원)}	포 항 시 흥해읍 산18번지	북구 성곡리   일원	_	_	76,305		

## 나. 결정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시 설 명	결정 내 용	결 정 사 유
6	연 구 시 설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포항분원)}	∘신 설: 연구시설 ∘위 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산18번지 일원 ∘면 적: 76,305㎡	· 한국지질자원연구원(포항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연구시설 결정

## 다. 도로 결정 조서

		규	모			연장			사 용	최 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능	(m)	기 점	종 점	기 등 형 태	최 조 결정일	비고
신설	중로	2	연1	15	국지 도로	74	중1-58 성곡리 산 31	흥해읍 성곡리 산18	한 대	_	

## 라.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2-연1	∘ 신설 ∘ L=74m ∘ B=15m	<ul><li>본 도로는 연구시설의 진입도로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결정하고자 함</li></ul>

- 3.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 실음 생략)
- 4. 관계도서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 도면은 토지이용 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및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와 북구청 건축지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는 포항시청 도시계획과(☎054-270-34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포항시공고 제2010 - 368호

공 인 공 고

포항시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조 공인의 인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3. 22

포 항 시 장

1. 등록공인 사용개시 : 2010. 3. 26

2. 등록사유 : 포항시 해양스포츠제전 실무위원회 구성

3. 신조 공인명 및 인영

공인명	규 격	인 영	비고
포항시해양 스포츠제전 실무위원회 위원장의인	한글전서체 3.0㎝ 정방형	形型の記述の記述の記述の記述の記述の記述の記述の記述の記述という。	